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다220538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송홍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임동국
환송 전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20나1663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
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나1933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0. 3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화물의 하역 작업을 하던 소외인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고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피고와 체결한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에 따라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원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3556호). 위 사건에서 원고 등이 근로복지공단에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30%,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인과 피고의 내부관계에서 피고의 부담비율을 20%로 인정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해자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17032호,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2899호. 이하 '관련 손해배상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30%로 인정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적극적·소극적 재산상 손해액 및 정신적 손해액을, 피해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승계참가를 한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공단이 대위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손해 상당액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해자와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손해배상사건의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인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가 공동의 면

책을 얻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부담부분에 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등 참조). 이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 또는 그의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각 항목별로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과 변제액을 각기 산정하여 부담부분 초과 배상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들이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총 손해액을 기준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과 변제액을 산정하여 부담부분 초과 배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손해를 재산상 손해 부분과 위자료 부분으로 나누어 원고의 부담부분과 변제액을 각기 산정하고, 원고의 재산상 손해 변제액이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관련 손해배상사건의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관련 공동면책액 중 피고의 내부적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소외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금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적 부담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배상받아야 하는 총 손해액 중 원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피고가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어야 한다. 이때 피해자가 배상받아야 하는 총 손해액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고, 원고의 부담부분과 변제액은 이러한 총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피해자의 손해를 재산상 손해 부분과 위자료 부분으로 나누어 원고의 부담부분과 변제액을 각기 산정하고 원고의 부담부분 초과 변제 여부를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행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은 이유 있다.

다. 한편 원심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적극적 재산상 손해액 중 기왕치료비를 0원으로 전제하고 계산한 결과,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한 금액은 모두 원고의 변제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관련 손해배상사건 판결은 피해자의 전체 기왕치료비를 145,985,070원으로 인정하였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전제로 근로복지공단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를 산정하여야 하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한 금액 중 위 대위 범위 내의 금액을 원고의 변제액에 산입하여 원고의 부담부분 초과 변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5.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성수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박영재